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홍국표 의원입니다.

- 제331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여전히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시민들의 금융피해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기관위임 사무로 민생노동국과 자치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그 법적근거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 최근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광고와 허위·과장 표현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당한 금융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번 제정안은 현재 법령이 규정한 관리 체계에 더해,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불법 대부행위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설치, 대부업자들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공 등 시장의 책무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부업 관리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한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대부업자의 불법·과장 광고 예

방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과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 제4조에서 관할 구역 내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제5조에서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7조에서 불법 광고의 정기적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나아가 제10조, 제12조에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 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성실 이수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제정안의 본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민들의 금융피해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과장 대부

업 광고로부터 보호받고,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